**제품(서비스) 판매 계약서**

주식회사 비에스지 파트너스(이하 "공급자")과 주식회사 프론티어 리테일(이하 "구매자")은 2025년 7월 15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제품(서비스) 판매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2조에 명시된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본건 제품 등")를 공급하고, "구매자"는 그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계약의 대상)**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본건 제품 등"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세한 규격 및 사양은 [별지1] '제품(서비스) 명세서'에 따른다.

1. 제품(서비스)명: 'Nexa-POS' 스마트 판매 관리 솔루션
2. 수량: 1식 (5 라이선스 포함)
3. 단가: 금 삼천만원 정 (₩3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4. 총 계약금액: 금 삼천만원 정 (₩3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 **제3조 (대금 지급)**

1)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본건 제품 등"의 총 계약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계약금: 금 일천오백만원 정 (₩15,000,000), 2025년 7월 22일까지

\* 잔금: 금 일천오백만원 정 (₩15,000,000), 제5조에 따른 검수 완료 후 10영업일 이내

2) 모든 대금은 "공급자"가 지정하는 아래의 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은행명: 신한은행

\* 계좌번호: 110-123-456789

\* 예금주: 주식회사 비에스지 파트너스

# **제4조 (납품 및 인도)**

1) "공급자"는 "본건 제품 등"을 2025년 8월 15일까지 "구매자"가 지정하는 아래의 장소에 설치 및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 장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프론티어 리테일 본사)

2) 납품 및 인도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운송비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본건 제품 등"의 소유권은 "구매자"가 제3조의 잔금을 완납한 시점에 "공급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위험 부담 책임은 "구매자"에게 인도된 시점부터 "구매자"가 부담한다.

# **제5조 (검수)**

1) "구매자"는 "공급자"로부터 "본건 제품 등"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량, 규격, 상태 등을 검수하여야 한다.

2) 검수 결과 하자 또는 계약 내용과의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구매자"는 즉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구매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서면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본건 제품 등"은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검수 불합격 시, "공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교환, 수리 또는 재작업을 통해 완전한 제품을 재납품하여야 한다.

# **제6조 (하자보수)**

1) "본건 제품 등"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제5조의 검수 합격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공급자"는 제1항의 기간 내에 "구매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구매자"로부터 보수 청구를 받은 경우,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신속하게 수리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

# **제7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양 당사자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본 계약의 중요한 조항을 위반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4.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경우
5.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 (손해 배상)**

1) 일방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의 총 손해배상 책임은 본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실제 지급한 총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의 납품 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구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9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상,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또는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위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제11조 (불가항력)**

천재지변, 전쟁, 테러, 전염병 등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이 지체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 **제12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제1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제13조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지1]** 제품(서비스) 명세서

**2025년 7월 12일**

|  |  |
| --- | --- |
| 공급자:  회사명: 주식회사 비에스지 파트너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대표이사: 홍길동 (인) | 구매자:  회사명/성명: 주식회사 프론티어 리테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대표이사/성명: 김민아 (인) |